

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5. 9.

하동군의회 의장 강 대 선

1. 규칙명: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」에 따라 하동군의회 회의록 공개 시기, 방청 제한시 그 사유와 근거 안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신설(안 제56조)

-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공개

나.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 고지 규정 신설(안 제93조)

4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6일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- 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 바란다)
- 3) e-mail: jh9760@korea.kr

- 붙임 1.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2.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.

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 례 명: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규칙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1항 본문 중 “회의록은”을 “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
이 완료되는 대로,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완
료하여”로 한다.

제9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
다.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
주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<u>회의록은</u>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(홈페이지에 게재 로 갈음할 수 있다. 이 조에서 같다)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 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 개하지 아니한다. ② ~ ⑥ (생 략)	제56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<u>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</u> <u>작성이 완료되는 대로, 회의록</u> <u>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</u> <u>내에 작성을 완료하여</u> ----- -----. ----- -----.
제93조(출입 및 방청제한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93조(출입 및 방청제한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</u> <u>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</u> <u>내해야 한다. 이 경우 문서로 요</u> <u>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</u> <u>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.</u>

관 련 법 령 (발 취)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83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